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 람	기관의 장

제2309호
2026년 9월 3일
목요일

공 고

- 공 고 제 1623 호 도시계획시설(도로: 도림1지구 소로3-15호선) 사업 도 시 재 생 과 2
공사완료 공고
- 공 고 제 1627 호 「화물(여객)자동차운수사업법」위반('26.6월 차고지 외 자동차관리 과 3
밤샘주차)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6-1623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: 도림1지구 소로3-15호선)사업 공사완료 공고

남동구 고시 제2025-223호(2025. 12. 31.)로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 도림1지구 소로3-15호선)사업이 완료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9. 3.

남 동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31-2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)
- 명칭: 도림1지구 소로3-15호선 도로개설공사

3. 사업규모

- B=6.0m, L=104.0m, A=755.2m²

4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
- 성명: 남동구청장(도로과)
- 주소: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(만수동)

5.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일

- 2023. 11. 23. ~ 2026. 8. 19.(준공검사증명서 발급일)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6-1627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,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46조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6. 09. 03. ~ 2026. 09. 20. (17일간)
2.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: 「화물(여객)자동차운수사업법」 위반(차고지 외 밤샘주차)
3.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용

행정처분 사전통지내용					
연번	성명	차량번호	주소	처분의 원인된 사실	예정된 처분내용 (과징금: 원)
1	(주)경영로지스O	인천85자316O	인천 남동구 남동대로	차고지외 밤샘주차	200,000
2	김경O	인천99아477O	인천 남동구 구월말로		100,000
3	김철O	인천84바373O	인천 남동구 논현로		100,000
4	김현O	인천83사967O	인천 남동구 논고개로		100,000
5	배정O	인천84바446O	인천 남동구 앵고개로		100,000
6	이수O	인천85자414O	인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		100,000
7	인대O	인천84바195O	인천 남동구 만수로		100,000
8	장경O	인천81바386O	인천 남동구 논현로		200,000(2건)
9	장선O	인천84바327O	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		100,000
10	최선O	인천84바810O	인천 남동구 오봉동로		100,000

4.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(T. 032-453-2916)로 방문, 우편 및 팩스(F. 032-453-2919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, 제출한 의견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.

2026. 09. 02.

남 동 구 청 장

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2. 7. 11.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	기타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남동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